

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·웹툰 진흥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만화·웹툰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·웹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만화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“웹툰”이란 「만화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만화·웹툰의 창작·제작·유통·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만화·웹툰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·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구청장은 만화·웹툰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- 1 만화·웹툰 진흥의 기본방향
- 2 만화·웹툰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3. 만화·웹툰 관련 전문인력(인재) 양성에 관한 사항

4. 만화·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5. 지역 문화·관광·지역자원과 연계한 활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) ① 구청장은 만화·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만화·웹툰 창작·제작 지원 및 창업 지원
2. 만화·웹툰 관련 교육·멘토링·인턴십 등 전문인력(인재) 양성 사업
3. 만화·웹툰 공모전, 전시회, 체험 프로그램, 관련 행사 개최
4. 만화·웹툰산업 실태조사, 정책 연구 및 통계·자료 구축
5. 유통·마케팅·판로개척 및 국내외 교류·협력 지원
6. 만화·웹툰 관련 기관·단체의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
7.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·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만화·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·기업·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송파구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